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5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서영교・박희승・임오경

박지원 • 윤준병 • 위성곤

임호선 · 이해식 · 한정애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감면) ①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	
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	
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	
<u>024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하고,	027년 12월 31일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	
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	
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	2

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 허세를 면제한다.

③ (생략)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 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 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 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 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 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 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 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u>2027년 12월 31일</u>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u>2027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